# 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」

[시행 2010. 8.11] [대통령령 제22332호, 2010. 8.11, 타법개정]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 <개정 2001.9.1, 2006.1.16, 2008.7.7>
- 제2조(농산물의 범위)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, 알과 그 밖의 부산물을 말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3조(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)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### **제4조** 삭제 <2001.9.1>
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심의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제7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에 표시인증 분과위원회 및 안전성 분과위원회를 둔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8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 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.
  - ② 분과위원장,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,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(이하 "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"라 한다)의 간사와 서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.

- 제9조(분과위원회의 회의)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만,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출석분과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 ·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.
- ④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,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#### **제10조** 삭제 <2009.12.14>

**제11조**(위원의 수당 등) 심의회,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**제12조**(운영세칙)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제13조(이력추적관리 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)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서 "행상·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**제14조**(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)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, 산,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. 다만,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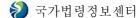
**제14조의2** 삭제 <2009.12.14>

**제14조의3** 삭제 <2009.12.14>

**제14조의4** 삭제 <2009.12.14>

**제15조**(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)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(법인만 해당한다)로 한정한다. 다만,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6조(지리적표시의 심의·공고·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적합한 사항이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의결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.
  - 1. 신청인의 성명 · 주소 및 전화번호



- 2.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- 3.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
- 4. 명성·품질,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
- 5.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
- 6. 제4항에 따른 열람 장소
-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·공고·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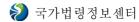
- **제17조**(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) ① 법 제8조제7항제5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 된 품목이 아닌 경우
  - 2.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
  - 3.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
  - 4. 해당 품목의 명성·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 인하지 않는 경우
  - 5.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- ②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 (Panax ginseng C.A. Meyer)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의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**제18조**(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) 법 제8조의8 및 제11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 등의 시정명령, 판매의 금지, 표시의 정지,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- 제19조(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(이하 "심판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1.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인 사람
  - 2.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 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
  - 3.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
  - 4. 지적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-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심판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



④ 심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20조(심판위원회의 운영)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조의13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 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8조의15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 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 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.
  -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(審理)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 (審決)에 고려하지 아니하며,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반환한다. 다만,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- 1. 심판번호
  - 2. 당사자·참가인(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, 대 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
  - 3. 당사자·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(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4. 심판사건의 표시
  - 5.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
  - 6. 결정 연월일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21조(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하여 그 위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를 한 결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・사용하는 농지・용수・자재 등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산물안 전정보시스템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**제22조** 삭제 <2009.12.14>

**제23조** 삭제 <2010.8.11>

**제24조** 삭제 <2010.8.11>

**제25조** 삭제 <2010.8.11>

**제25조의2** 삭제 <2010.8.11>

**제25조의3** 삭제 <2010.8.11>

제26조(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)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「식품위 생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(이



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,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**제27조**(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)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  - 1. 유전자변형농산물: "유전자변형농산물(임산물 또는 축산물)"로 표시
  - 2.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: "유전자변형농산물(임산물 또는 축산물) 포함"으로 표시
  - 3.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: "유전자변형농산물(임산물 또는 축산물) 포함 가능성 있음"으로 표시
  -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해당 농산물의 포장·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.
  - 1.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
  - 2.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
  - 3.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 -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### **제27조의2**(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) ① 삭제 <2010.8.1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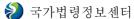
-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·조사는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업종·규모·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. <개정 2009.12.14>
- ③ 삭제 <2006.1.16>
-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·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12.14, 2010.8.11>

# [전문개정 2002.7.13]

#### [제목개정 2010.8.11]

- 제27조의3(공표명령의 기준·방법 등)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  - 1. 표시위반물량: 100톤 이상
  - 2.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: 10억원 이상(가공품의 경우 20억원 이상)
  - 3.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: 2회 이상
  -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 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27>
  - 1. 업체명 · 업주명 및 주소
  - 2. 위반농산물명
  - 3. 위반내용
  - 4. 처분내용





-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 1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8.11>
- 1. "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위반사실의 공표"라는 내용의 표제
- 2. 영업의 종류
- 3.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
- 4.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
- 5. 위반내용
- 6. 처분권자, 처분일 및 처분내용

제28조(농산물의 검사대상 등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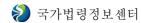
- 1.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(이하 "생산자단체등"이라 한다)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
- 2.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
- 3.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
- 4.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2와 같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29조(검사원의 자격요건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(이하 "검사원"이라 한다)의 자격은 곡류, 특작·서류, 과실·채소류, 종자류, 잠사류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.
  - ②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(누에씨 및 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.
  - 1.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
  - 2.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-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원 자격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.
  - 1.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
  - 2.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  -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⑤ 검사원의 자격전형에 참여하는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⑥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·방법,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30조(확인·조사·점검 대상 등) 법 제25조제1항에서 "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
  - 2.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
  - 3.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





- **제30조의2**(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.
  - ②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,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(需給)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

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**제30조의3** (자격시험의 방법·시험과목 및 합격기준) ①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 - ②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,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.
  - 1.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
  - 2. 원예학개론(수확 후의 품질관리론을 포함한다)
  - 3. 농산물유통론
  - ③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,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.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<개정 2006.1.16>
  -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,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 <개정 2008.2.29>

# [본조신설 2003.7.29]

- **제30조의3**(자격시험의 방법·시험과목 및 합격기준)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 - ②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,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
  - 1.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
  - 2. 원예작물학
  - 3. 농산물유통론
  - 4.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
  - ③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,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. 이 경우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  -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,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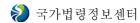
# [전문개정 2009.12.14]

[시행일 : 2011.1.1] 제30조의3제2항

**제30조의4** 삭제 <2008.10.20>

**제30조의5** 삭제 <2008.10.20>





- 제30조의6(자격시험의 공고 등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, 시험과목, 시험방법, 합격기준,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27>
  -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고,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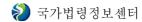
- **제30조의7**(합격자의 공고 등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, 그 명단을 자격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합격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#### [전문개정 2009.12.14]

- 제31조(포상금의 지급) 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 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10.8.11>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다.

- **제32조**(권한의 위임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12.14, 2010.8.11>
  - 1.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운영
  - 2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(임산물은 제외한다)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
  - 3.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
  - 4.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
  - 5. 법 제7조의5 및 제7조의6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ㆍ 등록취소 등의 처분
  - 6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(임산물은 제외한다)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
  - 7. 법 제8조의7, 제8조의8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농산물등의 지리적표시품, 표준규격품, 우수관리인증농산물,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. 다만,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.
  - 8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(축산물은 제외한다)과 이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(법 제13조에 따른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) 및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
  - 9. 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
  - 10.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농산물(축산물은 제외한다)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
  - 11.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
  - 12.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
  - 13.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(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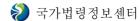
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)

- 14. 법 제25조에 따른 확인 · 조사 및 점검 등
- 15.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
- 16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
- 17.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
- 18.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. 다만,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.
- 19. 법 제29조의6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
- 20.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
- 21.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
- 22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. 다만,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.
- 23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. 다만,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.
-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12.14>
- 1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
- 2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
-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12.14>
- 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
- 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
- 3. 법 제8조의7, 제8조의8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 의 처분
- 4. 법 제29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
- 5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
- 6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(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
-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·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12.14>
- ⑤ 삭제 <2001.9.1>
-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의 일부를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12.14>
- **제32조의2**(업무의 위탁)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안 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.
  -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.

# [전문개정 2009.12.14]
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



### [전문개정 2008.7.7]

**부칙** <제22332호, 2010. 8.11> 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7조의2의 제목 "(원산지표시 등의 조사)"를 "(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 또는 제2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로, "시·도"를 "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"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법 제15조·제15조의2·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"을 "법 제 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"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11호 중 "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"을 "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"로 한다.

별표 3 제2호사목 중 "법 제15조제2항,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 형농산물의"를 "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"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자목 중 "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"을 "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"로 한다.

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
- 가.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
- 1)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(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)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2) 1)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3)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,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,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
- 1)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/2을 부과한다.
- 2)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,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.
- ② 및 ③ 생략

**제5조** 생략

